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자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969

발의연월일: 2025. 4. 18.

발 의 자: 구자근 • 최수진 • 김기현

박준태 • 인요한 • 김위상

정동만 · 김도읍 · 이상휘

김성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사업자에 대하여 원재료 등 일정한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를 예정신고·확정신고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규정에 따라 대기업 등은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납부유예가 불가능하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 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납부 유예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 2).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중견사업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중소·중견사업자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소·중견사업자는"을 "중소·중견사업자등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중 "중소·중견사업자는"을 "중소·중견사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항후단 중 "중소·중견사업자"를 "중소·중견사업자등이"로 하며, 같은 항후단 중 "중소·중견사업자"를 "중소·중견사업자등이"로 한다.

- 1.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 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사업자
-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 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사 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0 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제50조의2(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차지하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 조에서 "중소·중견사업자등" 소 · 중견사업자(이하 이 조에 이라 한다)-----서 "중소・중견사업자"라 한다) 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 한 원재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 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0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 할 수 있다. <신 설> 1.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 는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 • 중견사업자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재 <신 설> 산에 상당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 받은 중소·중견사업자는 납세 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48조 에 따른 예정신고 또는 제49조 에 따른 확정신고 등을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 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중견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중견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생략)

기 # 시에게 된 시 표시도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
②
<u>중소·중견사업자등은</u>
,
3
<u>중소</u>
<u>· 중견사업자등이</u>
중소·
중견사업자등
<u>0 化作用作 0</u>
,
④ (현행과 같음)

기에 처하게 되 사어가근서